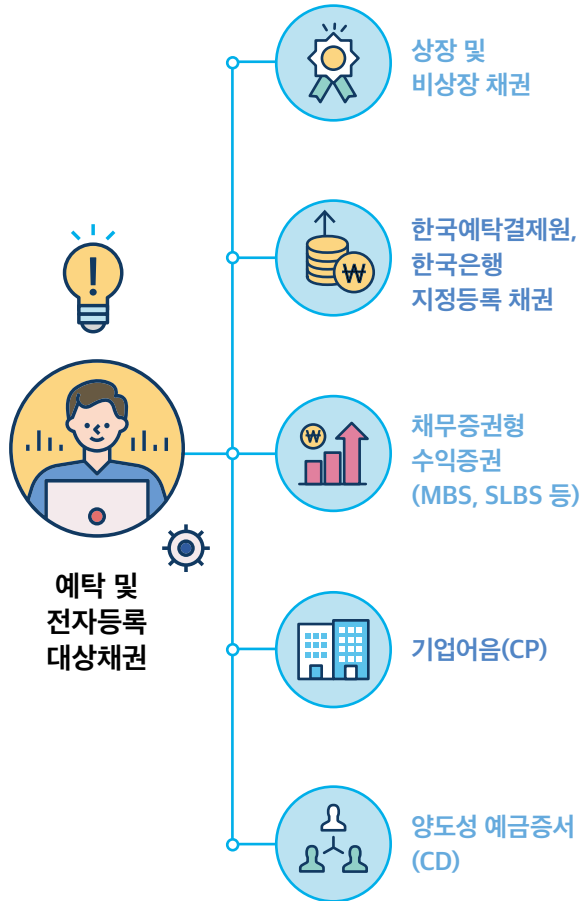


예탁 및 전자등록 채권 등



한국예탁결제원의 채권 등의 원리금 수령은
어음교환제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연장 및 지급거절이 발생하지 않은 종목은
오후 2시 30분 전후에 자금화되어 지급됩니다.

채권 — 권리관리 — 서비스

채권 권리관리 서비스 안내
www.ksd.or.kr

서비스안내
✓
유통시장지원
✓
권리관리
✓
채권권리

심의조정필(리스크-1603, 2020.07.17.)

Bond Corporate Actions Service

채권 권리관리 서비스 문의처

Tel. 02-3774-3182, 3381, 3382, 3383, 3385
Fax. 02-3774-3352
E-mail. bondem@ksd.or.kr

KSD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채권 등의 원리금 수령 및 지급,
옵션부채권에 대한 권리행사, 주식관련사채에 대한
권리행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채권 권리관리 세부 서비스

- 예탁 및 전자등록 채권 등의 원리금 수령 및 지급
- 옵션부채권 권리행사
- 전환권, 교환권, 신주인수권 권리행사
- 예탁 및 전자등록 채권 등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 교환대상주식 및 실기채권 관리 등





예탁 및 전자등록 채권 등의 원리금 수령 및 지급 절차

1. 원리금 지급 종목 선정 등

D-3

원리금 지급 종목 선정

계좌대체 등 제한

종목별·계좌관리기관(예탁자)별
원리금 지급명세 확정 및 통지

← 이자계산

D-2

과세표준 신고

← 계좌관리기관
(예탁자)

원리금 재확정

← 매매결제분
반영

D-1

과세수정신고

← 계좌관리기관
(예탁자)

원리금 최종 확정

← 매매결제분
반영

원리금 교환 청구

← 어음 교환 제시
(어음교환제도)

D-day

원리금 수령 및 원천징수

← 부도내역 반영

원리금 지급

2. 예탁, 반환, 계좌대체 제한

한국예탁결제원은 종목별·계좌관리기관(예탁자)별 지급명세 확정절차와 수령의 정확성을 위해 아래 정하는 기간동안 원리금 및 상환금 지급대상채권에 대한 예탁, 반환 및 계좌대체를 제한합니다.

❓ **채권, CD** : 원리금 지급개시일 및 개시일 전 2영업일간
(총 3영업일 제한)

❓ **어음** : 어음금액 지급일 및 지급일 전 2영업일간
(총 3영업일 제한)

❓ **실물 발행 채권 및 CD** : 예탁불가

금융결제원의 어음교환제도 전자정보화에 따라 실물채권의 원리금상환 불가
※ 시장결제, 기관결제(채권장외결제시스템에 의한 DVP 결제), REPO 거래 등의 경우
에는 계좌대체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지급일 전일까지 결제되는 매매분에 대하여는
매수자가 원리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거래내역을 일괄 확정 후 원리금 지급내역에
반영합니다.

3. 원리금 지급 청구

원리금 지급 청구 방법에는 직접청구와 교환청구가 있는데,
국채 및 외화표시채권은 직접청구에 의하고 그 외에는 교환
청구 방법에 의합니다.

❓ **직접청구** : 국채(국고채권, 재정증권, 통안증권 등)에 대한
원리금은 원리금 지급일 당일에 한국예탁결제원이 한국은행에
직접 청구합니다. 외화표시채권은 한국예탁결제원이 원리금
지급점에 직접 청구합니다.

❓ **교환청구** : 채권의 원리금 지급처가 은행인 경우 어음교환소인
금융결제원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어음
교환제도 참가자인 거래은행에 원리금의 교환에 필요한 절차를
위임하여 교환을 청구합니다.

4. 예탁 및 전자등록 채권 등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채권 등 원리금 지급 시 이자소득에 대하여 계좌관리기관
(예탁자) 자기분은 한국예탁결제원이, 계좌관리기관(예탁자)
고객분은 계좌관리기관(예탁자)인 금융기관이 원천징수
합니다.



옵션부채권 권리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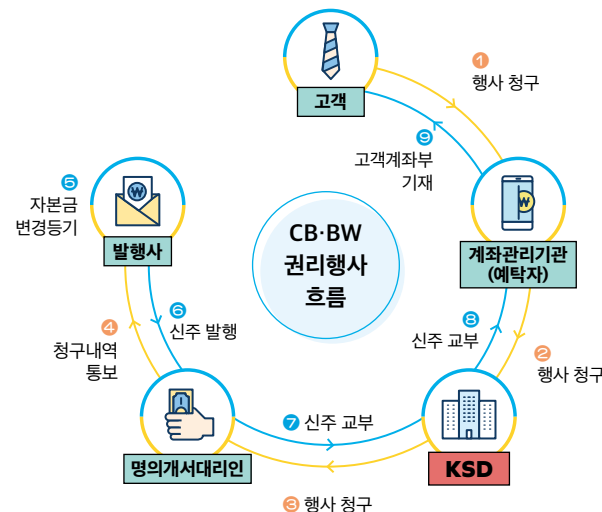
❓ **콜옵션채권** : 콜옵션채권은 발행자에게 조기상환 옵션이
부여된 채권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발행회사가 행사한
콜옵션에 대하여 원리금을 확정하고 수령하여 계좌관리기관
(예탁자)에게 지급합니다.

❓ **풋옵션채권** : 풋옵션채권은 채권자에게 조기상환 옵션이
부여된 채권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풋옵션행사 청구기간
동안 계좌관리기관(예탁자)으로부터 청구를 받아(매일 오후
2시 마감) 발행회사에 청구내역을 통보하고, 이에 대한 원리금을
확정 및 수령하여 계좌관리기관(예탁자)에게 지급합니다.



주식관련사채 권리행사 (전환·교환·신주인수권부사채)

계좌관리기관(예탁자) 및 고객의 신청(매일 오후 2시 마감)에
따라 청구 종류별·종목별로 한국예탁결제원이 당일에 권리
행사 청구서를 작성하여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청구합니다.



교환대상주식 및 실기채권 관리

❓ **교환대상주식 관리** : 교환사채의 발행회사는 상법 및 자본
시장법 관련 규정에 따라 교환대상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 의무예탁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동 주식의 제반 권리행사를 대행합니다.

❓ **실기채권 관리** : 실기채권이란 채권자가 한국예탁결제원
으로부터 반환받은 등록필증을 원리금 지급 개시일까지
본인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않아, 원리금 지급일 현재
공사채등록부에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채권으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권리
행사를 대행합니다.